

한국은행법 주요 개정내용

1. 1962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제정 한국은행법(1950. 5. 5) | 1962년 개정(1962. 5. 24) |
|---|--|
| <p><최고 의사결정기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칭 : 금융통화위원회 · 기능 : 통화·신용·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· 구성(7인) : 재무부장관(의장) 한국은행총재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인 농림부장관 추천 1인 금융기관 선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·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: 없음 · 재의 부결 시 최종결정권 :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칭 : 금융통화운영위원회 · 기능 : 통화·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(외환정책 수립 기능은 재무부로 이관) · 구성(9인) : 재무부장관(의장) 한국은행총재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인 농림부장관 추천 2인 상공부장관 추천 2인 금융기관 추천 2인 ·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: 재무부장관 보유(신설) · 재의 부결 시 최종결정권 : 각의 보유(신설) |
| <p><총재 임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이 임명 |
| <p><감사 임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 |
| <p><은행감독기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칭 : 은행감독부 · 임원 : 은행감독부장 · 직원의 임면 : 은행감독부 고급직원의 임면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추천하고 하급직원은 총재가 임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칭 : 은행감독원 · 임원 : 은행감독원 원장 및 부원장 1인 · 직원의 임면 : 은행감독원 고급직원의 임면은 총재가 은행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하급직원은 총재가 임면 |
| <p><한국은행의 예·결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통화위원회가 승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의의 의결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승인 |
| <p><업무감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한국은행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정부에 입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무부장관이 보유(신설) |

2. 1963년~1982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963년 개정 (1963. 12. 16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‘각의’를 ‘국무회의’로, ‘내각수반’을 ‘대통령’으로 개정 (헌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) |
| 1968년 개정 (1968. 7. 2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예금지급준비율의 일률적인 적용을 배제 |
| 1977년 개정 (1977. 12. 3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정적립금의 적립한도를 폐지하고 적립비율을 5%에서 10%로 인상 · 은행감독원 부원장보를 임원으로 추가 · 은행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권 부여 · 예금지급준비율의 하한(10%) 폐지 · 예금지급준비율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예외취급 대상기관에 수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 추가 · 최저예금지급준비금 계산방법 변경 (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하던 것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반월별로 계산) · 지급준비자산제도 신설 (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 외에 별도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요구 가능) ·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에 임업, 건설업 및 용역업을 추가 ·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의 신설 |
| 1982년 개정 (1982. 12. 3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국은행 예·결산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승인 ·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추가 · 공무원 중 국·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의 피임자격 부여 · 한국은행 종합대차대조표의 공고기일 연장 (매월초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) ·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차등적용 근거 삭제 |

3. 1997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종 전 | 1997년 개정(1997. 12. 31) |
|--|---|
| <p><목적> ·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·신용제도의 건전화</p> | <p>·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·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</p> |
| <p><정책결정기구> · 명칭 : 금융통화운영위원회 · 위원구성 : 총 9인 - 당연직 : 재정경제원장관, 한국은행총재 - 임명직 : 재정경제원장관 추천 1인, 금융기관·농림부장관·통상산업부장관 추천 각 2인 ·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 겸임 · 임명직 위원 전원 비상근</p> | <p>· 명칭 : 금융통화위원회 · 위원구성 : 총 7인 - 당연직 : 한국은행총재 - 임명직 : 재정경제원장관·한국은행총재·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·상공회의소회장·은행연합회회장·한국증권업협회장 추천 각 1인 · 한국은행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임 ·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상근</p> |
| <p><통화신용정책> · (신 설) ·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국채 및 정부보증채로 제한</p> | <p>·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·공표 ·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타 유가증권을 추가</p> |
| <p><은행감독기능> · 한국은행에 은행감독원을 설치하며 은행감독원에는 원장, 부원장 각 1인과 부원장보 3인 이내를 둠 · 일반은행에 대한 인가, 경영지도, 규제, 검사 및 제재기능 수행</p> | <p>· 은행감독원 설치 및 은행감독기능 관련 규정 폐지 · 한국은행에 은행감독기능을 제한적으로 부여 -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</p> |
| <p><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> · (신 설) · (신 설)</p> | <p>· 한국은행은 연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·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</p> |
| <p><조직 및 직제> · 총재 : 재정경제원장관 제청, 대통령 임명 · 부총재 및 이사 : 총재 추천,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임명 · 감사 :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동의, 재정경제원장관 임명</p> | <p>· 총재 : 국무회의 심의, 대통령 임명 · 부총재 및 부총재보 : 총재 임명 · 감사 : 재정경제원장관 추천, 대통령 임명</p> |
| <p><내부경영> ·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검사 및 감사원의 회계검사 실시 · 예산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승인 · 정관 변경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</p> | <p>·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검사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만 실시 ·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경비예산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· 정관 변경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·의결</p> |

4. 2003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종 전 | 2003년 개정(2003. 9. 3) |
|--|---|
| <p><금융통화위원회 구성> · 당연직(1인) : 한국은행 총재</p> <p>· 임명직(6인) : 재정경제부장관 추천 1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추천 1인</p> <p><한국은행 부총재 임명> ·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</p> | <p>· 당연직(2인) : 한국은행 총재, 한국은행 부총재</p> <p>· 임명직(5인) : 재정경제부장관 추천 1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인 (삭 제)</p> <p>·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</p> |
| <p><지급결제업무> ·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·관리업무</p> | <p>·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기준을 제정하고 동 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</p> <p>·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는 동 제도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</p> |
| <p><물가안정목표> · 연간 물가안정목표제</p> | <p>·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가능</p> |
| <p><예산승인제도> · 경비예산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음</p> | <p>·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음</p> |
| <p><금융기관 검사요구권> ·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사 및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해야 함</p> | <p>· 개정 전과 근본적으로 동일 (다만 한국은행이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'지체 없이' 응하도록 함)</p> |
| <p><대국회 보고> ·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을 국회에 보고</p> | <p>·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을 국회에 보고</p> |

5. 2011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종 전 | 2011년 개정(2011. 9. 16) |
|---|--|
| <p><목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·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· (신 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·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·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 |
| <p><금융기관 자료제출요구 및 공동검사> (자료제출요구대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은행, 은행지주회사 및 한은과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기관 <p>(공동검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국은행의 검사·공동검사 요구에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기관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추가 ·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(1개월 이내)에 따라 검사·공동검사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함 |
| <p><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작성 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서 작성, 의사록 작성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공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 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전문(익명 처리)의 비공개 제출(의사록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후 4년 경과분으로 한정) 의무 추가 |
| <p><긴급유동성 지원제도> (긴급여신 요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 <p>(영리기업여신 요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 <p>(공개시장조작 방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매매 <p>(일시결제부족 자금지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신 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 악화된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고 여신 결정 전 정부 의견청취 의무 추가 ·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고 여신 결정 전 정부 의견청취 의무 추가 · 종전의 증권매매 방식 외에 증권대차 방식 추가 ·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일중으로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시 지원 가능 |
| <p><지급준비제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급준비금 대상채무는 예금채무이며 지급준비금은 반월별로 계산하고, 채무종류별로 지급준비율 차등 적용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급준비금 대상채무를 예금채무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고 지급준비금은 월별로 계산하며, 채무종류별 외에 채무 규모별로도 지급준비율 차등 적용 가능 |
| <p><한국은행권 발행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신 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사 및 재판 종료 후 한국은행이 위·변조 화폐를 집중관리하며, 주화 훼손행위 시 형사처벌 |

| 종 전 | 2011년 개정(2011. 9. 16) |
|--|--|
| <대국회 보고> ·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| ·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|
| <회계제도> ·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·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: 결산상 순이익금의 10% | ·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·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: 결산상 순이익금의 30% |

6. 2012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종 전 | 2012년 개정(2012. 3. 21) |
|---|---|
| <총재 임명> ·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| ·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|
| <한국은행권 발행> · (신 설) · (신 설) | · 화폐단위 · 기념화폐의 발행 |
| <외화자산운용> · (신 설) | ·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대해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|
| <예산승인제도> ·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음 | ·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|

7. 2016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종 전 | 2016년 개정(2016. 3. 29) |
|---|---|
| <p><주화훼손죄 법정형 강화></p> <p>·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</p> | <p>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 |
| <p><조문의 체계 정비></p> <p>· 제28조(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) ...제11의2, 제11의3, 제12호, 제13호... 제18호</p> | <p>· 제28조 제11의2 등 가지번호를 모두 삭제하고, 이후의 호 번호를 순차적으로 내림에 따라 총 9개의 호 번호 변경 (제12호, 제13호, 제14호...제20호)</p> |
| <p><법률의 한글화></p> | <p>·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, ‘고가물’을 ‘고가물(高價物)’로 하는 등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(併記)</p> |
| <p><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></p> | <p>·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, ‘1차에 한하여’를 ‘한 차례만’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,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</p> |
| <p><자연스럽고 간결한 법문장></p> | <p>· ‘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’을 ‘금융기관 대출’로 하는 등 부자연스럽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</p> |
| <p><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></p> | <p>·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(·), 반점(,)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</p> |

8. 2018년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

| 종 전 | 2018년 개정(2018. 3. 13) |
|--|--|
| <p><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차 등> ·(신 설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차를 위해 법 개정 후 최초 임명되는 일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으로 조정 · 임기 교차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봄 |
| <p><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> · 통계·조사 관련 자료·정보의 요구 대상으로 정부기관, 법인 및 개인을 규정</p> | <p>· 통계·조사 관련 자료·정보의 요구 대상에 정부기관, 법인 및 개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</p> |